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화성시여성가족 청소년재단 평정 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1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칙 제64호

평정 규칙 일부 개정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평정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하 “재단” 라 한다)의 인사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경력평정) ① 2급 이하의 직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평정은 당해직급에 한하여 평정하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평정점은 “별표3”과 같으며,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각 연·월·일별로 계산한다. 이 경우 1년은 12월로, 1월은 30일로 환산하되, 잔여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 기준일은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⑤ 경력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 「인사 규정」 제2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1. 「인사 규정」제36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인사 규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같은 규정 제37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규정 제36조제1항제2호·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인사 규정」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이 경우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인사 규정」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라. 「인사 규정」제36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 다만, 이 경우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인사 규정」제35조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인사 규정」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재심의·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나. 「인사 규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인사 규정」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인사 규정」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표이사가 「징계 규정」제6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이 재심의·노동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인사 규정」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제12조(평정제외) 당해 경력평정 제외기간은 제11조제⑥항에 따른다.

제15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비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 : 70%

2. 경력평정점 : 30%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2. 당해직급에서 근속년수가 높은 자

③ 제1항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인사 규정 제22조에 의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2급, 3급 직원은 최근 3년, 4급 이하 직원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2급·3급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 4급 이하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 기간이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 단위 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4항의 평정 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 단위 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은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16조(승진후보자) 인사 규정 제19조에 의하여 직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 인원의 4배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6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